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12. 18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 나. 회부일자 : 1999. 12. 20
- 다. 상정일자 : 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조례특위('99. 12.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가. 제안 이유

- 법률 제5947호('99. 3. 31)공포에 의한 비료관리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비료판매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평창군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위임사무 별표 삭제 : 비료판매업 등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허해성)

- 비료생산·판매 수출 및 수입명령제와 비료최고 가격 지정제를 각각 폐지하고, 비료수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비료판매업의 폐지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이 '99. 3. 31일자로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중 등록에 관한 사항인 제9조(비료판매업 등록)가 삭제됨에 따라 읍면에 위임된

비료판매업 등록사무를 폐지하여 비료산업의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입안취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끝 .